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고 병 준 의원)

의안 번호	24-90
----------	-------

발의년월일 : 2024. 8. .

발 의 자 : 고병준, 강동오, 권영숙,
남해석, 안미자, 이상원,
한선미, 홍지광

1. 개정이유

현행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된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상한선을 확대하여 청년정책에 지원 대상을 넓혀 마포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연령을 확대하여 정의함(안 제3조제1호)

3.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제3조 및 제4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4. 7. 23. ~ 7. 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본문 중 “34세”를 “39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청년”이란 19세 이상 <u>34세</u>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2. ~ 5. (생략)</p>	<p>제3조(용어의 정의) ----- -----.</p> <p>1. ----- <u>39세</u> ----- -----. ----- -----.</p> <p>2. ~ 5.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청년기본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53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6.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2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며 비용에 관한 사항은 관련 사업추진 결정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과정에서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관광경제국 고용협력과 이효진
연 락 처	02-3153-8642